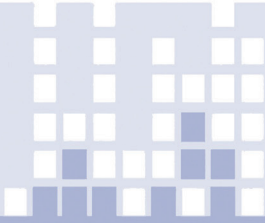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557-0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2. 이 책의 사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 주제별로 정리하였고, 문제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4. 이 책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 공유재산(물품), 계약 관련 조례	1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3
2.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5
3.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9
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11
5. 임대료 미반환 관행 개선	13
6.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	14
7.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1	16
8.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2	19
9.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명확화	22
10.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 명확화	24
제2편 건축(공동주택), 도시계획(공동구) 관련 조례	27
1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29
12. 녹지지역 등에 조경 부담 완화	31
13.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유지기간 연장	34
14.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38
15.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41
16.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	43
1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45
18. 법령에 적합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47
19.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50
20.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53
21.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주민 참여 보장	55
22.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57

제3편 주차장, 도로(교통) 관련 조례	59
2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참여 기회 보장	61
24.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63
25.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66
26.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의 조정 방지	71
제4편 유통(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관련 조례	73
27.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75
2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서류 제출 시기 개선	77
제5편 산업단지 관련 조례	81
29.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관련 규제 완화	83
30. 산업단지 내 부지 양도·대여 관련 규제 완화	87
제6편 그 밖의 조례	91
31. 공사장에 대한 규제 완화	93
32.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완화	97
33. 골재채취 예정기간 확대	100
34.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102
35.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 완화	106
36.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108
37. 법령과 다른 의용소방대원 해임 사유 삭제	110
38. 읍·면·동 복지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112
39.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 제한	114
40. 시험어업, 연구어업 등을 위한 어구 등 설치 허용	116
41.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겸직 허용	118
42. 지방 특산물 재지정 기회 부여	120
43. 특산물 품질인증기준 미달 상품 회수·폐기 제도 폐지	121
4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122
45. 옥외광고물(지주 이용 간판) 표시 제한 완화	124
46.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126
47.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기준 적용 의무 완화	128
48.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 완화	130

49. 제증명 수수료 미반환 관행 개선	135
50. 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136
51.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143

부 록 145

1.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소개	147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148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49
4.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150
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153

제1편

공유재산(물품), 계약 관련 조례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2.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3.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5. 임대료 미반환 관행 개선
6.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
7.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1
8.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2
9.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명확화
10.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 명확화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조례 내용

「00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00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0000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주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II. 개선방안

-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행정재산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 확대

조례 내용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호,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제78조제2항이 개정 (2015.2.16. 공포·시행)되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평가사에게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과 같이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로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6.21.>

[$(\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times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div (\text{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보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3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조례 내용

「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및 주차료) ①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이용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무료로 하며,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법령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주차한 차량의 물품분실, 파손, 도난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조례 내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조건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법령 근거 없이 「민법」 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구현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임대료 미반환 관행 개선

조례 내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례로 남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6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

조례 내용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7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1

조례 내용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간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00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의 지도·감독 하에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인력 채용 시에는 시와 협의하고 근무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돌봄센터(행정재산)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

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8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 2

조례 내용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4.1.7., 2015.1.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

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9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명확화

조례 내용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조례」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추정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조례에서는 상한금액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 명확화

조례 내용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조례」

제12조(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해복구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이 배제

II.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과 같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편

건축(공동주택), 도시계획(공동구) 관련 조례

1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12. 녹지지역 등에 조경 부담 완화
13.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유지기간 연장
14.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15.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16.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
1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18. 법령에 적합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19.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20.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21.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주민 참여 보장
22.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1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대수선 수수료 부담 완화

조례 내용

「건축 조례」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와 같이,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2

녹지지역 등에 조경 부담 완화

조례 내용

「건축 조례」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 조례에서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에도 조경을 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같이, 녹지지역 등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에 조경을 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폐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영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13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 유지기간 연장

조례 내용

「건축 조례」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으로서 1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2.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 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6.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7.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8.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결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심의결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건축법」 제11조제10항(2011.5.30. 공포, 2011.12.1. 시행)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건축 심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 기간을 법률보다 1년 단축하여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건축법」 제11조제10항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이 2년간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

-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14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조례 내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주자란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 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말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주택법」 제5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조례에서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강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분쟁 조정의 기회 부여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⑤ 제4항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6., 2013.3.23.>

⑥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⑦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12.24.>

⑧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에 따른 행위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2.1.26.>

⑩ 제42조의6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4.>

[전문개정 2009.2.3.]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5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 내용

「공동주택 조례」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매년 계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게시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착수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관련 증명서류,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교견적서, 공정표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착수신고 시 입주민 중에서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데, 조례에서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사업을 과도하게 통제

II. 개선방안

- 보조금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공동주택 관리사업의 자율성 보장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6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명확화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규정이 없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垓)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채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의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조례내용

「도시계획 조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관리 및 사용을 저해

II.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8

법령에 적합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조례 내용

「공동구 관리 조례」

- 제3조(비용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 등에 의한다.
-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가 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 하되, 그 비용은 설치공사의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공동구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비용을 법령에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하

II.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합치되는 방법과 절차로 공동구 설치비용을 결정하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을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19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조례 내용

「공동구 관리 조례」

제7조(공동구 관리비 부과 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점용시설 등"이라 한다)은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를 점용하는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회의 협의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1. 조명·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유지·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

③ 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 토목기술부문 등 전문분야 관리업체
- 1의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장이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⑧ 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서는 공동구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밀점검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만 규정하여 공동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우려

II. 개선방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맞게 공동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례 개정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약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전문개정 2010.7.9.]

20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조례 내용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서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누락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II. 개선방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맞게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5.11.11.>

21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주민 참여 보장

조례 내용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조례」

-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유비쿼터스도시 전담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유비쿼터스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4. 유비쿼터스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위원은 공무원, 사업시행자, 전문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을 누락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음

II. 개선방안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맞게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위원의 범위에 대상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 보장

관련 법령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조례 내용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18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3회 이상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제한

II. 개선방안

-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 충분히 제공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조서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대로 경계가 확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정본을, 그 밖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5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관하여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3편

주차장, 도로(교통) 관련 조례

- 2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참여 기회 보장
- 24.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25.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26.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의 조정 방지

2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참여 기회 보장

조례 내용

「주차장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접용료 또는 군 재산 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며, 납부금액은 입찰 가격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 ③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④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 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2015.1.20. 공포, 2015.7.21. 시행)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주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II. 개선방안

-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개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4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례 내용

「주차장 조례」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구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3.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5.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제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
7.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100분의 50 경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9. 「승용차부제 지원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100분의 50 경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단서에 따르면, 노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감면 여부, 감면율 등)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부과 및 주민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경형자동차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경형자동차 운전자의 주차요금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재이하 "노외주차

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0.3.22.]

25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조례 내용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만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재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1호	50		
마.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4호	200		
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5호	200		
사.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2호	50		

아.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6호	200		
자.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4)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6)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7)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1호	50 70 100 80 120 160 150 220 300 30 50 100 법 제7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부터 6)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7조 제1항제2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카.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1항제3호	자목 1)부터 7)까지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7호	200
파.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제3호	50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6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의 조정 방지

조례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관내지역(편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수요와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시간,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가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시외지역 운행 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5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지 않고, 교통약자의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 맞게 특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

단을 반드시 운행하는 내용으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

- ※ 만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조정하는 경우라면, 그 조례에서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4 편

유통(대규모점포, 전통시장) 관련 조례

- 27.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 2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서류 제출 시기 개선

27

영업시간 등 제한 면제 대상(대규모점포) 명확화

조례 내용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조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면제 대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정이 없음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없는 불편 발생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서류 제출 시기 개선

조례 내용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조례」

제12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II.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맞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사업자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 가. 요약문
-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m²)
-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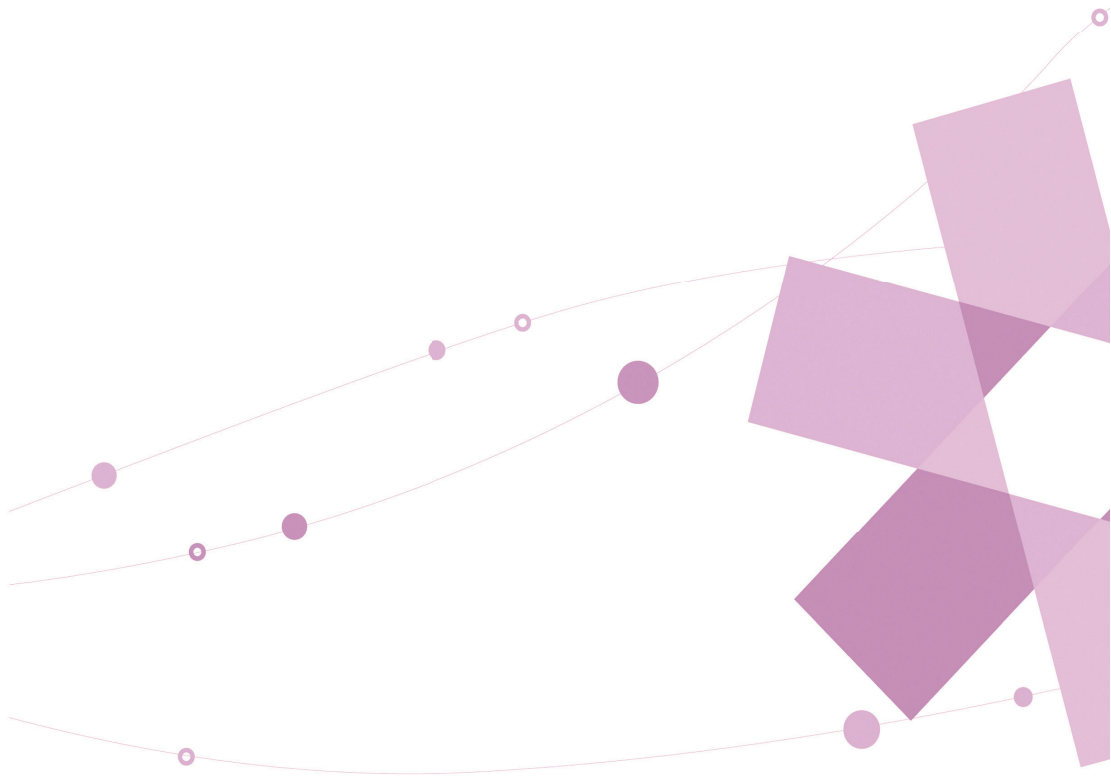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1.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 ⑤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5편

산업단지 관련 조례

- 29.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관련 규제 완화
- 30. 산업단지 내 부지 양도·대여 관련 규제 완화



29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관련 규제 완화

조례 내용

「산업단지 조례」

제7조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활동에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맞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

활동 촉진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014.7.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7.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4.>

⑤ 삭제 <2014.1.1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25., 2007.10.4., 2011.12.8., 2012.11.20.>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어린이집용지·공공의료시설용지·공공청사용지·공공문화시설용지·공공복지시설용지·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채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5., 2011.4.6., 2014.12.1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9.25.>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2011.4.6.>

⑩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⑪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9.25., 2011.4.6., 2013.3.23.>

⑫ 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4., 2008.9.25., 2011.4.6.>

⑬ 삭제 <2011.4.6.>

⑭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3.3.23.>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4., 2008.9.25.>

<16>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6.>

30

산업단지 내 부지 양도·대여 관련 규제 완화

조례 내용

「산업단지 조례」

- 제17조(양도와 대여 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등에서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여 지역 사업자의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 달리, 분양받은 부지를 양도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0.5.17., 2011.7.25.>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 6 편

그 밖의 조례

31. 공사장에 대한 규제 완화
32.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완화
33. 골재채취 예정기간 확대
34.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35.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 완화
36.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37. 법령과 다른 의용소방대원 해임 사유 삭제
38. 읍·면·동 복지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39.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 제한
40. 시험어업, 연구어업 등을 위한 어구 등 설치 허용
41.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겸직 허용
42. 지방 특산물 재지정 기회 부여
43. 특산물 품질인증기준 미달 상품 회수·폐기 제도 폐지
4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45. 옥외광고물(지주 이용 간판) 표시 제한 완화
46.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47.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기준 적용 의무 완화
48.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 완화
49. 제증명 수수료 미반환 관행 개선
50. 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51.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31

공사장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 내용

「생활소음 관련 조례」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 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소음·진동이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당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 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 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 공도서관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옥내에서 옥외 로 소음이 나 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 성 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 음이 나오 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 업 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32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요건 완화

조례 내용

「액화석유가스사업 조례」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조례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 요건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3

골재채취 예정기간 확대

조례 내용

「골재채취 조례」

제3조(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골재채취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기간 보다 5년을 단축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맞게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② 시·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34

작은 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

조례 내용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5조(설립 기준)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
2. 15석 이상의 열람석
3.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확보.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는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①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② 열람석 6석 이상, ③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매년 신규자료 추가 확보, 열람석 15석 이상)하고 있어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 가중

II. 개선방안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맞게,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제목개정 2009.9.21.]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 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1. 점자제판기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p>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p>	<p>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p>		
<p>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p>			
<p>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p> <p>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p>			
<p>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p>			

35

도서관 등록 취소 기준 완화

조례내용

「도서관 지원 조례」

- 제7조(폐관 및 등록 취소)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 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작은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자료 복사료, 강습·교육 수수료, 도서관입장료 이외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를 규정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외에 조례에 규정한 등록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경제활동 보장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36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조례 내용

「의용소방대 조례」

제5조(임용기준 등) ①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소방 관련 자격·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② 대원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와 임기만료 전에 그 직을 그만둘 경우 그 기간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정년을 63세로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맞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 보장

관련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37

법령과 다른 의용소방대원 해임 사유 삭제

조례내용

「의용소방대 조례」

제14조(해임사유) 임용권자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된 경우
2. 대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구역 외로 이주하여 상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이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로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에 미달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임하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법령과 달리 규정하여 당사자의 혼란 및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맞추어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혼란

및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 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9>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38

읍·면·동 복지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조례내용

「사회복지 조례」

제27조(복지위원의 위촉)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및 임직원
 4. 물품·재능·서비스 기부에 솔선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②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해야 한다.
- ③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장은 복지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조례에서는 복지위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

II. 개선방안

-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복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관련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 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39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운영비 보조 제한

조례내용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에 위반

II.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맞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40

시험어업, 연구어업 등을 위한 어구 등 설치 허용

조례내용

「어촌·어항 개발 및 관리 조례」

제42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 의한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어 부당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맞게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7.14]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4.22.>

1. 정당한 권한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1

지방의료원 임직원의 겸직 허용

조례 내용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겸직제한) 의료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의료원의 상근임원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근임원 외의 임직원은 겸직을 금지하여 임직원의 경제활동 제한

II. 개선방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개선하여 임직원의 경제활동 보장

관련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료원은 겸직자의 보수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2

지방 특산물 재지정 기회 부여

조례내용

「특산물 지정 조례」

제14조(재 지정신청 금지) 지정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다시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역 특산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산물 지정을 취소하고, 특산물 지정이 취소된 품목은 다시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특산물 지정 취소 후 품질 향상 등의 노력으로 특산물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까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특산물 지정 취소 후 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된 경우 등 특산물 지정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특산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재기 기회 부여

43 특산물 품질인증기준 미달 상품 회수·폐기 제도 폐지

조례내용

「특산물 품질 인증 조례」

- 제6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이 품질과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시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품질인증 기준 미달로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철회하고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상품에 인증 표시가 부착된 상품과 포장재 등은 회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품질 인증제도는, 해당 상품이 지자체의 품질 인증을 받은 후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할 경우 품질인증 표시만 제거하도록 하면 충분할 것인데, 조례로 해당 상품을 회수·폐기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

II. 개선방안

-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한 상품은 품질인증 표시만 제거하도록 하고, 상품을 회수·폐기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한 조례 규정은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44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확대

조례 내용

「문화재 보호 조례」

제46조(이의신청) ① 시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구청장·군수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자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보 하여야 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30일 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함

II. 개선방안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부여

관련 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45

옥외광고물(지주 이용 간판) 표시 제한 완화

조례 내용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 부지 안에는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나.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다.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지주(支柱)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조례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그 건물

부지 안에는 지주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지주 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 완화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46

하천점용료 분할 납부 허용

조례 내용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

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취료의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6개월씩 균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매년 1월과 7월에 납부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는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납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 초래

II. 개선방안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맞게 점용료등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7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기준 적용 의무 완화

조례내용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 조례」

제4조(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시장은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지자체장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 부과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으로 하여금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8

흡연실 설치 금지 규제 완화

조례내용

「금연구역 관련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특정 구역(도시공원 등)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주민 불편 초래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 해소

관련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 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②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3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금 연 건 물</div> 〈건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금 연 시 설</div> 〈시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금 연</div>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000 - 0000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요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표지 부착

-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제증명 수수료 미반환 관행 개선

조례 내용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7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I. 문제점 (유형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주민이 납부한 수수료는 관련 신청사항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II. 개선방안

- 신청사항이 취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사항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증명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부담 완화

50

법령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조례내용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등) ①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②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단위: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0	3,000	3,000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에서는 법 제9 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차 위반 시부터 3차 위반 시까지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II. 개선방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 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조례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해소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행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행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3호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				
가)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	100	200

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	50	100
다)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	30	50
라)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실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	10	30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가) 매장 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매장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경우	100	200	30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경우	50	100	200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30	50	1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0	30	5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3	5	10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의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50	100	200
나) 영업장 면적이 165㎡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30	50	100
다) 영업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경우		10	30	50
라) 영업장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	10	30
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4호	50	150	300
바.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5호	50	100	300
사.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7호	200	250	300
자. 법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 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법 제41조제1항 제7호의2	200	250	300
차.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2호	30	50	100

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경우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8호	200 150	250 200	300 300
타. 법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고품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9호	200	250	300
파. 법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0호	50	70	100
하. 법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1호	50	150	300
거. 법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품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2호	100	200	300
너. 법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3호	100	200	300
더. 법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4호	100	150	200
러. 법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5호	50	70	100
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제16호	50	70	100
버.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법 제41조제2항 제3호	50	70	100

51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조례내용

「포상 조례 등」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별지 서식 및 제출서류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함

II.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별지 서식, 제출서류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부 록

1.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소개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4.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부록1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소개

www.law.go.kr

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란?
국가법령 4천건과 전국 지자체 조례 9만건을 클릭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도 쉽게 찾고, 여러 지역의 조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모든 기능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1 하나! **규제대비현황 공개**

전국 243개 지자체별 규제개선 현황과 규제대비순위를 국민들께 모두 공개합니다.

(정비현황 10월 기준)

2 들! **조례입법예고안 의견제출**

입법예고 조례안 의견제출이 더 쉽고 간편해집니다.

주무부처 검토의견
의견쓰기
국민 검토의견
의견쓰기

(내년 3월 시행)

3 셋!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메일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법제처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부록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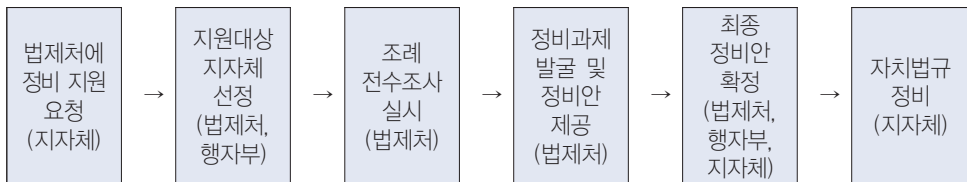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2014.3월부터 시행)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를 검토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정비 추진

* 조례 정비과제 발굴 유형 분류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이탈, 상위법령과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신설 ④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⑤ 기타(인용조문 오류 등)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체계



부록3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 입법기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하면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장이 의견제시를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요청
 - *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요청 불가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방법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제출(044-200-6761)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해석정보/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의견제시 요청서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자치입법지원/의견제시 요청/의견제시 요청서

[부록4]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시기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 *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교육감	
		지방의회 의장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조례	
		규칙	√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가?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입안중	
		입법예고중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 의결	
		조례·규칙 공포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체크	세부내용
<p>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p> <p>*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p>	●	
<p>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p> <p>*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p>	●	

1. 질의요지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 의견제시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을 적습니다.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나. 을설

4.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 의견제시 요청대상에 대해 요청기관의 의견을 적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습니다.

5.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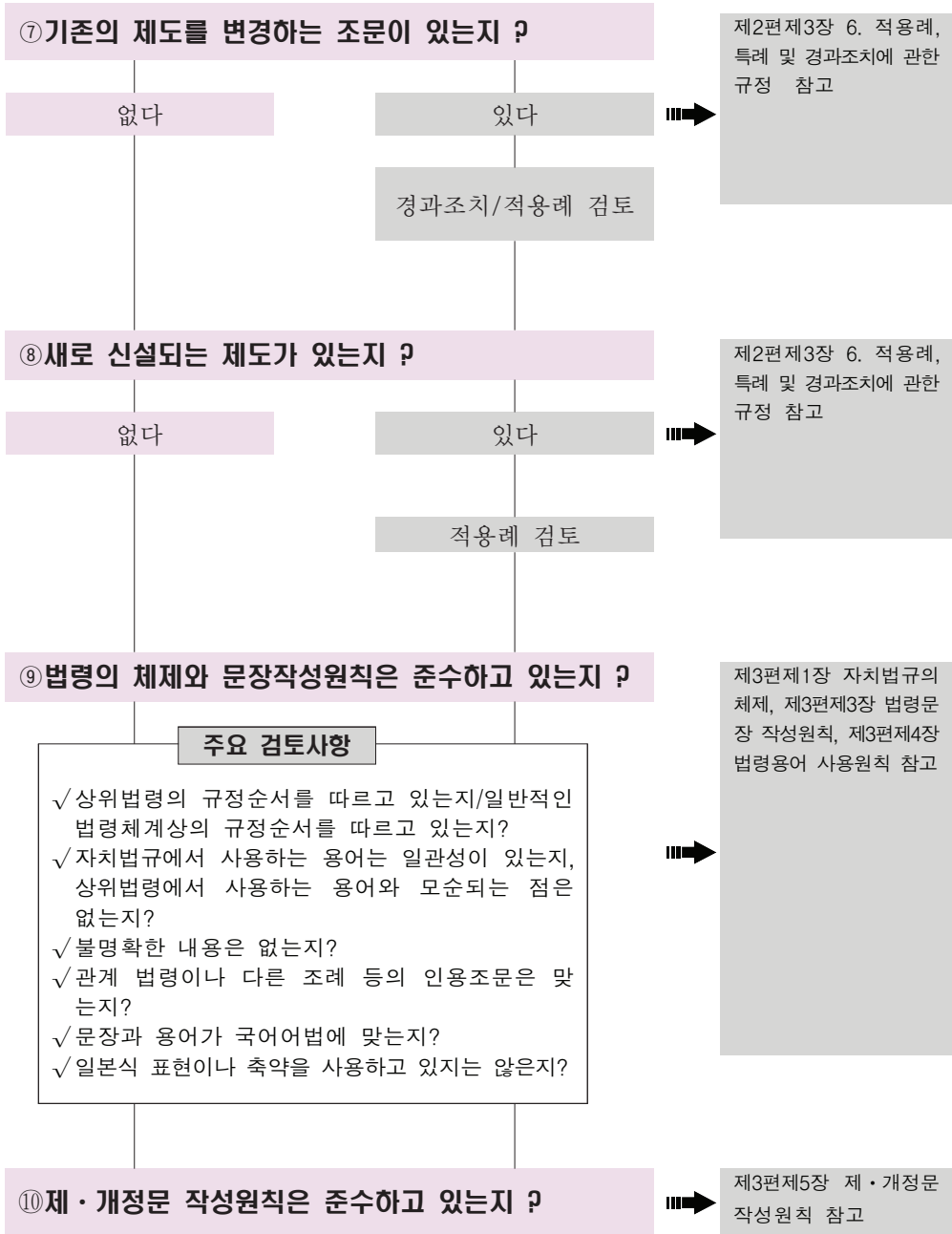
- ☞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로 적고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록5]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일러두기

자치법규 입안체크리스트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수사항과 필수사항을 검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둔 것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표시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직접 관련 부분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입안분야별 세부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입안기준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발행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화: 044)200-6900

F A X: 044)200-6972

발행일: 2015년 12월

디자인·인쇄: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
